

예산총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4,159,280	16,924,778
일반회계	484,128,880	14,523,866
특별회계	80,030,400	2,400,912
공기업특별회계	44,733,783	1,342,013
상수도사업	10,739,028	322,171
하수도사업	33,994,755	1,019,843
기타특별회계	35,296,617	1,058,899
의료급여기금	1,870,505	56,115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98,090	2,94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70,000	2,100
농공지구조성	3,273,996	98,220
중소기업육성자금	5,680,000	170,4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80,877	35,426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05,980	6,17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421,500	12,645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9,738,948	292,168
수질개선관리	4,557,113	136,713
보건진료	1,845,650	55,370
농업발전기금	6,353,958	190,6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97,359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4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